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가단79944 판결 [매매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변론 종결 2018. 6. 22

판결 선고 2018. 8. 3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1.부터 이 사건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6. 11.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10. 피고들 앞으로 2011. 9. 27.자 매매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하지 않은 채 2011 . 9.말경 피고들에게 1억 3, 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 중4,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또는 F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지급 채무자로서 피고들의 채권자인 F에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내지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F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공동하여 매매대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점에 관 하여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원고가 F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채권자대위권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이고,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원고의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내지 매매대금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위 각 피보전채권 전부가 존재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피고들에 대한 나머지청구를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병룡